

자동화기기 이용(신규, 해지)신청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ATM통장출금 서비스

인감(서명)확인	담당	책임자

신청고객

성명		생년월일	
이용계좌번호	- -	전화번호	

신청내용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ATM통장출금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신규	<input type="checkbox"/> ATM통장출금 서비스 신규
<input type="checkbox"/>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해지	<input type="checkbox"/> ATM통장출금 서비스 해지

본인은 당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자동화기기 이용(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거래인감날인)

전산인자란

1	
2	
3	
4	

- ※ 필요서류 : 실명증표, 출금통장, 통장인감
- ※ 본인확인을 위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자동화기기 이용(신규, 해지)신청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ATM통장출금 서비스

신청고객

성명		생년월일	
이용계좌번호	- -	전화번호	

신청내용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ATM통장출금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신규	<input type="checkbox"/> ATM통장출금 서비스 신규
<input type="checkbox"/>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해지	<input type="checkbox"/> ATM통장출금 서비스 해지

본인은 당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자동화기기 이용(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거래인감날인)

전산인자란

1	
2	
3	
4	

- ※ 필요서류 : 실명증표, 출금통장, 통장인감
- ※ 본인확인을 위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매체)

하나은행이 설치·운영중인 자동화기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 하나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및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출금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2. ATM통장출금 서비스 : 하나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출금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제 4 조 (이용신청)

이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승낙 및 관련내용을 전산등록한 이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이용자의 확인 및 비밀번호)

1. 은행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무통장/무카드 비밀번호
 - 나. ATM통장출금 서비스 :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ATM통장출금 비밀번호
2. 이 서비스에 이용되는 비밀번호는 계좌비밀번호, 생일, 동일숫자, 연속숫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이 용이한 숫자는 사용할 수 없다.
3. 비밀번호를 기억할 수 없을 경우 이의 조회 및 확인을 할 수 없고, 신규에 준하여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6 조 (출금계좌)

출금계좌의 지정은 서비스 신청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용시간)

서비스별 운영시간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시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출금 및 이체)

1. 출금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출금시점까지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으로 하며, 해당 예금거래약관이나 약정서에 불구하고 카드/통장 없이 혹은 청구서나 수표없이 통장만으로 출금할 수 있다.
2. 출금 또는 이체를 완료한 거래는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정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내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 발급요청 할 수 있다.

제 9 조 (출금 및 이체한도)

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및 1일 출금한도(이체금액 포함)는 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수수료)

1. 출금 및 이체수수료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은 영업점에 변경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
2. 수수료는 예금이나 약정서에 불구하고 예금통장,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출금하기로 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서비스 비밀번호가 연속하여 3회 이상 오류인 경우 (다만 3회 이전에 유효한 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오입력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2. 서비스 신청후 도중에 미이용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
3. 1일 출금 및 이체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4. 지정계좌의 출금가능액이 출금 또는 이체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작을 때
5. 이체대상계좌가 사고신고, 해약, 거래중지, 잔액증명 발급 또는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6.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7.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 한도는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경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출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8. 기타 법령사항의 사유로 인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될 때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변경,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 해지된다.

제 13 조 (제 사고의 신고)

1. 거래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신청내용의 변경은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은행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면책)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 5 조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
3. 통장의 위, 변조 등 자동화기기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사고신고 접수후 처리에 필요한 상당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

제 15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 16 조 (준용규정)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금융결제원규약, 예금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또는 은행에서 정한 업무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한다.